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18
----------	------

제안연월일 : 2019. 11. 27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37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2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의안번호 1037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의안번호 1142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함(제4조 및 제5조제1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의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9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③ 위원은 해당 회의 끝남과 함께 위촉해제된다.</p> <p>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삭 제></p>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 제7109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

-----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 제7109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